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학생 대상 양성평등의식 수준 조사

나. 예산액 : 49,765,3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년 10월 3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관련 법령 조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학생 대상 양성평등의식 수준 조사는 교육부 사업 일정 및 본원 연구사업 일정에 맞추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필요한 연구결과를 시의적절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조속한 사업 착수가 필요하므

로, 이에 긴급입찰을 진행하고자 함

다. 공고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긴급입찰공고 진행함.(10일 공고)